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739 호

2007년 2월 9일 금요일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40호(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41호(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7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42호(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12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43호(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등에 관한 조례) 24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44호(인천광역시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29
-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845호(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44

규 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684호(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53

훈 령

- 인천광역시남동구훈령 제230호(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 59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120호(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2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121호(폐기 공인 공고) 6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122호(일반용역 입찰공고(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 6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123호(보상계획열람재공고(운연동소3-1호선도로개설공사)) .. 6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125호(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실시 공시송달) 7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126호(2007년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기관 공모) .. 78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127호(시설공사입찰공고(만수1동 청사신축 전기공사)) 8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128호(시설공사입찰공고(만수1동 청사신축 정보통신공사)) 8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129호(시설공사입찰공고(만수1동 청사신축 소방(전기,기계)설비공사)) .. 8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133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 과징금부과 공시송달 공고) ... 92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134호(용역(일반) 입찰공고(남동구 동청사 청소관리 용역)) ... 9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7-137호(2007년 남동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안내 공고) 97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7-6호(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104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조 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7년 2월 9일

남동구 조례 제84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집행기관 : 759명
3. 총 계 : 778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연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남동구 (이하 “구”라 한다)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
1. 집행기관 : <u>754명</u>	1. 집행기관 : <u>759명</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총 계 : <u>773명</u>	3. 총 계 : <u>778명</u>

【별표】

기관별 ·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현행						개정안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소	동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소	동
총계	773	498	19	43	17	196	778	503	19	43	17	196
정무직 계	1	1					현행과 같음					
구청장	1	1										
일반직 계	678	445	11	40	16	166	683	450	11	40	16	166
3급	1	1					현행과 같음					
4급	5	3	1	1								
5급	42	17	2	5	1	17						
6급	137	91	3	6	3	34						
7급	196	144	5	7	4	36	198	146	5	7	4	36
8급	207	137		12	7	51	208	138		12	7	51
9급	90	52		9	1	28	92	54		9	1	28
별정직 계	1	1					현행과 같음					
7급상당	1	1										
기능직 계	93	51	8	3	1	30						
기능6급	3	3										
기능7급	5	4				1						
기능8급	12	10	2									
기능9급	26	14	5	2		5						
기능10급	47	20	1	1	1	2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대기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대기보전업무의 증가 및 남동공단 산업단지가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신규인력 충원과,
- 2007년부터 본격 시행계획인 총액인건비제 관련 “지방자치단체 실무인력보강 지침”에 의한 인력확충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

□ 주요내용

- 총계정원 773명을 778명으로 조정
- 집행기관 정원은 754명에서 759명으로 조정
(일반직 7급2명, 8급1명, 9급2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7년 2 월 9 일

남동구 조례 제841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남동구(이하“구”라 한다)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 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 3 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구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구청장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조(시책의추진) ①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조(지원대상) 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 6 조(지원의 범위) ①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 2 장 자문위원회

제 7 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구청장은 제4조의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남동구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관할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 센터·출입국 관리사무소 등 적정한 직위에 있는 자
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거주외국인 업무소관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거주외국인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 8 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자문을 위한 기능은 다음 각호의 사항과 같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9 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

제12조(외국인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위탁 및 운영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 ①구청장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21일을 “남동구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행사
4. 그 밖에 외국인 및 여러 나라의 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구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구청장은 국내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에 대한 표창)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

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남동구표창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우리구에 등록된 외국인의 수의 증가로 구성되므로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과 외래문화의 수용을 통하여 세계인류 문화의 보편적 가치를 창조하고, 인권의 숭고함을 실천하여 외국인도 구성원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기능을 통합하여 우리민족의 포용성·우수성과 인류의 공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우리 풍토에 적응력 향상·친밀감 도모·생활 편의 향상함에 있음

□ 주요내용

-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한 지위 설정
- 거주외국인 지원을 위한 구의 책무 및 지원 범위 설정
-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규정
- 외국인 지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주간 설정,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에 대한 표창 등을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7년 2 월 9 일

남동구 조례 제84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익상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 2 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 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 3 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 4 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 5 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 3 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 6 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제 7 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 8 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천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 4 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 9 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0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11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써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2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3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7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인천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8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9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1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의5 내지 제2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의5 내지 제2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부터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2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3조(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항만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선박에 대하여는 부동산 및 선박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 5 장 보 칙

제24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7년1월1일 부터 적용 한다.

②(한시규정) 이 조례는 2009년12월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소				
감면내용	세목	연도/기분	당초세액	감면세액
감면사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수신자

제 목 지방세 감면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감면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지 합니다.

①년도	②기분	③세목	④과세번호	⑤당초 결정세액	⑥감면 결정세액	⑦차인납부세액	⑧납기한
결정사유							

끝.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협조자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 행 일 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 수 일 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구세감면에 대한 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한센정착농원, 종교단체의 의료업,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감면
- 평생교육시설 등,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
- 임대주택 및 미분양 주택, 사권제한 토지 등,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규정
- 지방공사 및 신용보증재단,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규정
- 아파트형공장 및 시장정비사업,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유통산업지원,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규정
-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및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규정
- 직접사용의 의미 및 감면신청,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에 대한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7년 2 월 9 일

남동구 조례 제84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등에 관한 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除氷) 책임범위등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성숙된 주민의식 및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이 깔린 길바닥의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하는 재료·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8. “작업도구”라 함은 제설·제빙(除氷)작업에 필요한 삽·빗자루·모래·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를 말한다.

제 3 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보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포함)·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除氷)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 4 조(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 5 조(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별지】 예시도 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보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포함)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제 6 조(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강설중 수시로 시행하고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 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7 조(작업의 방법) ①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 8 조(작업도구의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 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 9 조(행정지도) ①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除氷) 의무이행을 다 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 등의 행정지원에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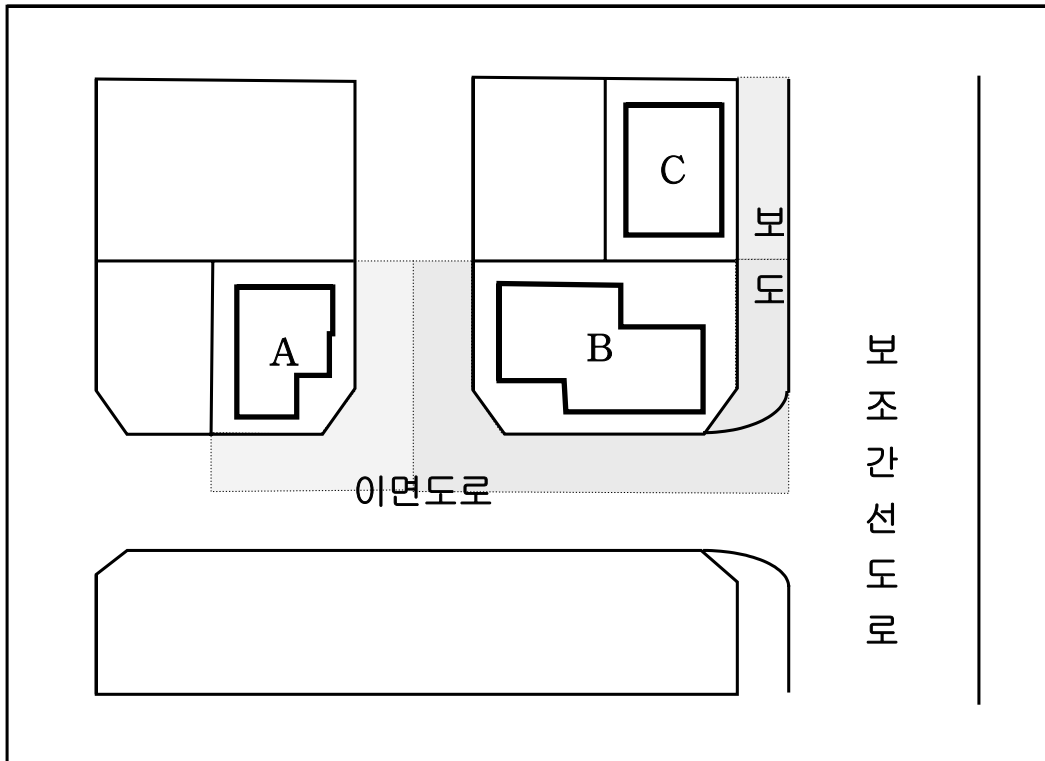
②『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과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구청장은 불이행 자에 대하여 이행촉구 및 권고 등 행정지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설·제빙 책임범위 예시도



※ A건축물 :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B건축물 : 보도와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C건축물 : 보도에 접한 경우

※ 예시도의 용어설명

- 보 도 :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
- 이면도로 :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
- 보조간선도로 :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로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도를 포함하는 도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성숙된 주민 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음

□ 주요내용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함 (안 제3조)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를 규정함 (안 제4조)
-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함 (안 제5조)
-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함 (안 제6조)
- 제설·제빙작업 방법을 규정함 (안 제7조)
- 제설·제빙작업 도구의 비치·관리(안 제8조)
- 제설·제빙 작업의무 이행을 위한 지도 권고등 행정지도 사항규정(안 제9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하수관리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7년 2월 9일

남동구 조례 제84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하수관리 조례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개발·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함은 지하수법(이하“법”이라한다)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남동구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의 규정

에 의하여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 2 장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

제 3 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5조 각호 이외의 부분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 한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 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타펌프(자흡식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

제 4 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이행보증금의 금액과 예치 시기는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의한다. 다만, 「규칙」 제17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0
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 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시행령(이하“령”이라한다)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수질 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제 3 장 지하수관리 위원회 설치·운영

제 6 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남동구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남동구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7 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남동구의회 의원
2. 남동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동구 소속 공무원 및 남동구구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이 된다.

⑤서기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9 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장 특별회계 설치 및 재원의 관리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아래와 같이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보조금
2.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6.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예치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이를 특별회계에 예탁한다.
7. 법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제1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 내지 제8호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기타 구청장 및 위원회에서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제14조(회계관직 공무원) ①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제12조 및 제13조의 회계 관직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별회계 징 수 관 : 소관사무의 국장
2. 특별회계 경 리 관 : 소관사무의 국장
3. 특별회계 분임징수관 : 소관사무의 과장
4. 특별회계 분임경리관 : 소관사무의 과장
5. 특별회계 채권관리관 : 소관사무의 과장
6. 특별회계 채무관리관 : 소관사무의 과장
7. 특별회계 지 출 원 : 소관사무의 담당
8. 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 소관사무의 담당
9. 특별회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소관사무의 담당

10. 특별회계 물품출납원 : 소관사무의 담당

②직무의 위임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사무취급 예)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구청장은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3. 기타 구청장이 별도 규정하는 개발·이용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이용부담금은 월별 또는 분기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45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③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도 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 하여야 한다.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전산용2)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

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로 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제18조(가산금) ①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9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장 별 칙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 44조제3항 별표8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제21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 함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한다.

제22조(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①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

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
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
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
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 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
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

제25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 6 장 보 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반행위 조사서

1. 대 상 자

가. 법인(상호)명 :

나. 대 표 자 :

다. 법 인 번 호 :

라. 주민등록번호 :

마. 소 재 지 :

바. 연 락 처 : (전화) (팩스)

2. 위반내용

3. 위반사유(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200 년 월 일

진술인 : (인)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서

시 행 :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하수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200○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
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200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서

납 부 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				
채 납 과 태 료 금 액	금 원 (₩)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채납되었으니 200○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채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200○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처분내역	부과기준		납부통지서번호	
	고지받은일자		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하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지서

시 행 :

수 신 :

발 신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하수법 제41조제3항과 관련입니다.

2.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고지일자		과태료금액	
	이의제기일자		이의제기 사유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1부.

2.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과태료 수납부

[illegible]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지하수법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부과·징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중 소규모시설에 대하여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규정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나 신고시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지하수 관리위원회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지하수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 포함11인 이내로 규정함
-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규정함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관한 사항 규정
-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지하수이용부담금에관한 사항을 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7년 2월 9일

남동구 조례 제84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사항 및 임대주택의 관리와 이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구역 내의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조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남동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위원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인으로 한다.

1.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
2.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3. 임대주택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4. 구 소속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

③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④제2항의 제1호·제2호·제4호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4 조(기능) 조정위원회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심의·조정한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과 관련한 사항
2. 관리비 운영 및 징수와 관련한 사항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사항
4.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하자보수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5.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가격에 관한 사항

제 5 조(회의 및 운영)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회의소집은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조(간사 등) ①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공동주택관리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 7 조(분쟁의 조정 신청) ①임대주택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7일 이내에 별

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조정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임대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관계전문가 포함)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통지서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 9 조(조정거부 및 중지) ①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조정의 효력)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 등은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종결 등) 조정위원회는 당해 조정 신청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임대주택 분쟁조정신청서				
신청인	임대주택명		관리사무소 연 락 처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조정신청 내 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 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동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임대주택 분쟁조정결서					
조정건명					
신청인	성 명		연 락 처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함을 의결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직	성 명	서 명	직	성 명	서 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3호서식]

임대주택 분쟁조정결통지서				
조정건명				
신청인	성 명		연 락 처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신청일자		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의결 내 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신청 사항에 대하여 남동구분쟁조정위원회 의결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별지 제4호서식]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조정건명				
신청인		조정일자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석대상자	성명	주소	연락처	비고
출석일자	년 월 일 (00 : 00)			
출석장소				
인천역시 남동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 조정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요구하오니 남동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동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임대주택 분쟁조정(거부·중지)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인	성 명		연 락 처	
	주 소			
피신청인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신청일자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사 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동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본 건의 분쟁조정을 거부·중지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남동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임대주택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구성·운영하도록 위임되어 위원회를 통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사이에 각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분쟁조정 대상 임대주택의 범위 (안 제2조)
- 분쟁조정 위원회의 구성 (안 제3조)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간의 분쟁을 조정 대상 (안 제4조)
- 분쟁조정 신청 절차 등 (안 제7조)
- 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 효력, 종결사항

규	칙
---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7년 2월 9일

남동구 규칙 제684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관련 [별표]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 【기관별·직급별 정원(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연 행						개 정 안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 소	동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소	동
총계	773	498	19	43	17	196	778	503	19	43	17	196
정무직 계	1	1					현행과 같음					
구청장	1	1										
일반직 계	678	445	11	40	16	166	683	450	11	40	16	166
3급 소계	1	1					현행과 같음					
행정	1	1										
4급 소계	5	3	1	1								
행정	2	1	1									
시설	1	1										
행정·임업	1	1										
보건·의무	1			1								
5급 소계	42	17	2	5	1	17						
행정	24	11	2		1	10						
의무	4			4								
토목	1	1										
건축	1	1										
행정·전산	2					2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1					1						
행정·토목	1	1										
행정·지적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토목·임업	2	1				1						
행정·화공·기계·환경	1					1						
행정·임업·토목·지적	1					1						
6급 소계	137	91	3	6	3	34						
행정	81	45	3		2	31						
세무	3	3										
사회복지	2	2										

직급별 기관별	연 행						개 정 안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 소	동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 소	동
전산	1	1					현행과 같음					
임업	2	2										
보건	1	1										
환경	1	1										
토목	3	3										
건축	3	3										
지적	3	3										
행정·세무	5	5										
행정·사회복지	9	6				3						
행정·기계	1	1										
행정·화공	1	1										
행정·농업	1	1										
행정·임업	1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2	2										
행정·토목	1	1										
임업·토목	1	1										
통신·전자통신	1	1										
보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	1			1								
의료기술·간호	1			1								
토목·건축	3	3										
행정·전기·건축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환경·화공	1	1										
행정·토목·건축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보건·약무·간호	1			1								
7급 소계	196	144	5	7	4	36	198	146	5	7	4	36
행정	104	67	5		2	30	105	68	5		2	30
세무	16	16					현행과 같음					
사회복지	11	5				6						
전산	3	3										
기계	2	2										
전기	3	3										
화공	1	1										

기관별 직급별	연 행						개 정 안					
	총계	본청	의외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소	동	총계	본청	의외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소	동
농업	1	1					현행과 같음					
임업	3	3										
수산	1	1										
보건	5	4		1								
의료기술	1			1								
간호	4			4								
환경	5	5					6	6				
토목	16	15			1		현행과 같음					
건축	11	10			1							
지적	5	5										
행정·별정												
화공·환경	1	1										
축산·수의	1	1										
보건·약무	1			1								
통신기술·전자 통신기술	1	1										
8급 소계	207	137		12	7	51	208	138		12	7	51
행정	98	65		1	3	29	현행과 같음					
세무	22	22										
사회복지	30	8				22						
전산	4	4										
기계	2	1			1							
전기	2	2										
화공	2	2										
농업	1	1										
임업	4	3			1							
축산	1	1										
수산	1	1										
보건	9	5		4			10	6		4		
의료기술	2			2			현행과 같음					
간호	5			5								
환경	5	4			1							
토목	8	8										
건축	4	3			1							
지적	3	3										

기관별 직급별	연 행						개 정 안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소	동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소	동
통신기술	1	1					현행과 같음					
임업·토목	1	1										
전기·기계	1	1										
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	1	1										
9급 소계	90	52		9	1	28	<u>92</u>	<u>54</u>		9	1	28
행정	42	21			1	20	현행과 같음					
세무	5	5										
사회복지	10	2				8						
전산	2	2										
전기	1	1										
화공	0	0					<u>1</u>	<u>1</u>				
임업	4	4					현행과 같음					
보건	6	2		4								
의료기술	4			4								
식품위생	1			1								
환경	3	3					<u>4</u>	<u>4</u>				
토목	5	5					현행과 같음					
건축	4	4										
지적	3	3										
별정직 계	1	1										
7급상당 소계	1	1										
수행비서	1	1										
기능직 계	93	51	8	3	1	30						
6급 소계	3	3										
전기	1	1										
기계	1	1										
조무	1	1										
7급 소계	5	4				1						
기계	1	1										
운전	3	3										
조무(조무)	1					1						
8급 소계	12	10	2									
전기	1	1										
기계	3	2	1									
운전	3	3										
사무보조(필기)	1		1									
조무(조무)	4	4										

기관별 직급별	연 행						개 정 안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 소	동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출장소	동
9급 소계	26	14	5	2		5	현행과 같음					
건축	1	1										
교환	1	1										
운전	9	4	1	1		3						
간호조무	1			1								
사무보조(필기)	2		2									
사무보조(사서)	1	1										
조무(조무)	10	7	1			2						
사무보조(워드) · 조무(조무)	1		1									
10급 소계	47	20	1	1	1	24						
기계	1	1										
운전	18	2		1	1	14						
조무(조무)	20	9	1			10						
조무(지도)	6	6										
사무보조(워드) · 조무(조무)	1	1										
사무보조(필기) · 조무(조무)	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대기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대기보전업무 증가 및 남동공단 국가산업단지
지가 약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됨에 따른 행정수요에 기여하고, 총액인건
비제 전면 시행관련 추가수요인력 공급으로 업무추진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
자함

□ 주요내용

- 총계정원 773명을 778명으로 조정
- 집행기관 정원은 754명에서 759명으로 조정 (7급2명, 8급1명, 9급2명)

훈 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7년 2월 9일

남동구 훈령 제23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정원 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관련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구 본청 각 실·과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 분	직 종	계급	현 행		개 정 안	
			정원	직급별 내역	정원	직급별 내역
합 계			498		503	
기 획	계		33		34	
감사실	일반직	소계	33		34	
		5급	1	행정1	1	
		6급	7	행정6, 전산1	7	
		7급	14	행정10, 전산3, 토목1	15	행정11, 전산3, 토목1
		8급	8	행정6, 전산2	8	
		9급	3	행정2, 전산1	3	
문 화				(생 략)		(현행과 같음)
홍보실						
~						
주민생활						
지원과						
주 민	계		22		23	
복지과	일반직	소계	21		22	
		5급	1	행정1	1	
		6급	5	행정3, 행정·사회복지2	5	
		7급	7	행정6, 사회복지1	7	
		8급	7	행정4, 사회복지3	8	행정5, 사회복지3
		9급	1	행정1	1	
	기능직	소계	1		1	
		9급				
		10급	1	사무보조(워드)·조무(조무)1	1	
청소과				(생 략)		(현행과 같음)
환 경	계		31		34	
위생과	일반직	소계	31		34	
		5급	1	행정·보건·환경1	1	
		6급	6	행정1, 보건1, 환경1, 행정·보건 2, 행정·환경· 화공 1	6	
		7급	9	행정 1, 보건 4, 환경 3, 화 공·환경 1	10	행정 1, 보건 4, 환경 4, 화 공·환경 1
		8급	11	행정2, 화공1, 보건5, 환경3	11	행정1, 화공1, 보건6, 환경3
		9급	4	보건2, 환경2	6	보건2, 환경3, 화공1
지 역				(생 략)		(현행과 같음)
경제과						
~						
도 시						
계획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대기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대기보전업무 증가 및 남동공단 국가산업단지가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됨에 따른 행정수요에 기여하고,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관련 추가수요인력 공급으로 업무추진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함

☐ 주요내용

- 대기관련 법령 재·개정 등 관련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
- 총액인건비제 도입 관련 업무증가에 따른 조직관리부서 인력보강
- 노인복지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정원

공	고
---	---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7 - 12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보육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5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남동구 영유아보육정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공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 조정과 지역여건 변화로 존치가 필요 없는 공립시설에 대하여는 위탁취소 규정을 명확히 하여, 보육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위원회 당연직 위원구성에서 4급 공무원을 구분청 공무원으로 개정(안제2조)
- 공립보육시설 위탁기간을 “2년”을 “3년”으로 개정(안제12조)
- 공립보육시설 위탁 취소규정에 구청장이 지역여건 변화 등으로 보육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때를 신설 및 문장의 해석 요건을 명확히 개정(안제18조)

4. 의견내용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2월 26일까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전화 453-5881, FAX453-585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붙임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구본청 4급이상 공무원”을 구본청 공무원“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8조 본문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구청장이 지역여건변화 등으로 보육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 종전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중인 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은 종전조례에 의하여 2년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7 - 121호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의거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6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폐기공인명

-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토지분할위원회인
- 남촌도림동장인(도림현장민원실전용)
- 논현고장동장인(고잔현장민원실전용)

2. 폐기사유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만기에 따른 위원회 종료
- 남촌도림동, 논현고잔동 현장민원실 폐지

3. 공인 폐기일 : 2007. 2. 6

4. 폐기 공인명 및 인영

공인명	인천광역시남동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인	공인명	남촌도림동장인 (도림현장민원실전용)	공인명	논현고잔동장인 (고잔현장민원실전용)
인 영		인 영		인 영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7 - 122호

일반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용역명 : 노점상 ·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
-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07.10.31일까지
- 다. 용역인원 : 총10명(3개조 편성운영)
- 라. 기초금액 : 223,729,000원(추정가격 : 203,390,000원, 부가세 : 20,339,000원)
-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7. 02. 06 (09:00) ~ 2007. 02. 15 (10:00)
- 바. 입찰집행(개찰) : 2007. 02. 15 (11:00) 우리구 경영재정과 입찰집행관 PC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유찰시에는 재입찰을 시행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까지 주된 영업소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
- 사업목적이 노상적치물정비 및 사후관리 전문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상 특별인부용역, 행정대집행보조인부용역, 지장물정비보조인부용역, 노점상정비지역 사후관리용역 중 2개 이상이 명시되어 있고, 순찰 및 적치물 운반 차량 2대 이상 보유
- 본 용역의 참가자는 용역원에 대한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계약시 또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단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허가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입찰서 제출방법

-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입니다.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인천광역시예규 430호 (2006.3.20)] 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나. 예정가격 결정 :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작성요령 【행정자치부예규 제190호 (2005.12.30)】 에 의거 $\pm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투찰자에 의하여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정합니다.
- 다.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라.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5. 적격심사

- 가. 심사기준
 -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82호) 및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인천광역시예규 430호 일반용역평가기준 : 5억원 미만 2억 이상인 용역)
- 나. 경영상태평가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의 사업지원 서비스업분야의 자기자본비율:56.96%, 유동비율:186.11%을 기준으로 평가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같음하며, 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유의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청렴이행계약제 시행대상으로 계약 체결 시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자치단체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 기타 과업설명은 도시정비과(☎453-2842)로 문의하시고, 계약관련사항은 경영재정과(☎453-226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전자입찰홈페이지(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7. 02. 05.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7 - 123호

보 상 계 획 열 람 재 공 고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운연동소3-1호선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변경 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

2007. 2. 6.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와명칭 : 운연동소3-1호선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규모 : L=215M, B=6M
4.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290-4번지일원
5. 보상시기 : 2007. 2월
6. 보상금지급처 : 남동구청건설과
7. 보상대상
 - 토지보상 : 운연동254-3번지외23필지
 - 지 장 물 : 도로개설 구간에 저촉되는 지장물에 한함
8.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고 개별로 협의체결 후 현금보상
9. 보상절차 : 보상에 필요한 서류 및 보상금액은 추후 개별 통지
10. 열람기간 : 2007. 2. 6 - 2007. 2. 20(15일간)

11. 열람장소 : 남동구청 건설과**12. 기타사항**

- 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28조에 의거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 ② 토지조서등은 남동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 있으신 분은 건설과에 문의 또는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③ 이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소유자등에 대하여 개별통지 하였으나, 미수령시 이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용 지 조 서

공사명 : 운연동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목	면적(M2)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동	지번		공부	편입	잔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운연	254-3	대	163	36	127	김홍길	부평구 부평동 623-29	(주)한미은행	서울 중구 다동 39 (부평중앙지점)	근저당 외1건
2		283-7	대	371	22	349	서호근	남동구 운연동 284-2			근저당권
3		284-3	대	105	105	-	서호근	남동구 운연동 255			
4		283-6	대	16	16	-	서호근	남동구 운연동 284-2			근저당권
5		283-8	대	102	102	-	서호영	남동구 운연동 283-2			
6		283-5	대	33	33	-	서호근	남동구 운연동 284-2			근저당권
7		283-9	도	14	14	-	서호근	남동구 운연동 255			
8		282-5	대	6	6	-	서운용	남동구 운연동 282	서춘이	인천남동구운연동283	
9		282-7	도	70	35	35	서현범외 1인	남동구 운연동 257-3	서춘이	인천남동구운연동283	
10		506	도	5,510	568	4,942	국(건설부)				
11		287-10	대	10	10	-	김영순	남동구 운연동 287-4			
12		286-10	대	33	33	-	이수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32-10			
13		287-9	대	19	19	-	서종순	남동구 운연동 257			
14		286-9	대	25	25	-	이경	남동구 운연동 286-2			
15		286-6	대	1	1	-	김명분	남동구 운연동 286-1			

용 지 조 서

공사명 : 운연동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목	면적(M2)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동	지번		공부	편입	잔여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6		287-6	대	45	45	-	신한을	남동구 운연동 270			
17		286-5	대	7	7	-	김명분	남동구 운연동 286-1			
18		290-4	대	4	4	-	이창덕	남동구 운연동 290-2	(주)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대구엔피엘관리센터)	가압류
19		289-5	대	55	55	-	이상례	서구 가좌동 4-2 범양 [㉠] 102/903	남동농업 협동조합	남동구 만수동 1014-1	근저당 외1건
소계				6,589	1,136	5,453					
20	운연	289-4	전	169	169	-	김광진외 1인	남동구 운연동 290-1	채인숙	부천시소사구송내동363-4	
21		290-3	대	82	82	-	김광진	남동구 운연동 290-1			
22		292-1	대	18	18	-	김학수	강화군 길상면 길직리 249	남동농업 협동조합	남동구 만수동 1014-1	근저당 외2건
23		293-1	전	92	22	70	인천시 남동구				
24		283-10	대	1	1	-	송양순	남동구 운연동 283-2			
소계				362	292	70					
합계		24필지		6,951	1,428	5,523					

지 장 물 조 서

공사명 : 운연동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장물면적(M2)			증별	구 조	용 도	소 유 자		비 고
	동 명	지 번	편 입	잔 여	계				주 소	성 명	
1	운연동	283-2	26.18	11.47	37.65		쇠파이프,비닐	창고	운연동 284-2	서 태 광	
		283-7									
2	운연동	283-2	8.20	18.20	26.40		샌드위치패널	창고	운연동 284-2	서 태 광	
		283-4					편입: 정화조-2식, 수목(임목조서참조)				
3	운연동	283-3	1.24	17.66	18.90		목재,라이트	창고	운연동 283-3	서 호 영	
			0.18	3.54	3.72		브릭,스레트	창고			
계			1.42	21.20	22.62		편입: 브릭담장(L=6.3M), 철조문(L=2.5M)				
4	운연동	282-2	-	61.55	61.55		세멘벽돌,기와,철판	주택	운연동 282-2	김 보 득	
			3.60	13.74	17.34		브릭,철판	창고			
			-	2.86	2.86		브릭,기와,철판	창고			
			-	21.88	21.88		브릭,기와,철판	창고			
			-	16.45	16.45		브릭,기와,철판	창고			
			-	14.00	14.00		목재,라이트	다용도실			
			-	6.76	6.76		브릭,스레트	창고			
계			3.60	137.24	140.84		편입: 양철판담장(L=18.0M), 수목(임목조서참조)				

지 장 물 조 서

공사명 : 운연동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 개 지		지장물면적(M2)			증별	구 조	용 도	소 유 자		비 고
	동 명	지 번	편 입	잔 여	계				주 소	성 명	
5	운연동	281-4	1.74	1.31	3.05		알루미늄샷시,샌드위치패널	창고	운연동 287-4	김 영 순	
							편입: 적벽돌담장(L=1.2M)				
6	운연동	286-3	4.16	-	4.16		쇠파이프,목재	세면대	운연동 286-3	박 동 순	
							편입: 양철판담장(L=21.1M), 관정-1식				
7	운연동	286-2	20.87	63.76	84.63		브릭,스레트	식당	운연동 286-2	이 경	
			0.69	31.61	32.30		목재,라이트	통로			
			-	28.40	28.40		브릭,스레트	창고			
			-	58.79	58.79		브릭,기와	주택			
			-	20.46	20.46		세멘벽돌,스레트	창고			
			-	27.93	27.93		목재,쇠파이프,라이트	통로			
계			21.56	230.95	252.51		편입: 정화조-1식				
8	운연동	287-3					편입: 양철판담장(L=8.6M)		운연동 287-3	서 중 순	
9	운연동	287-1					편입: 세멘벽돌담장(L=15.8M)		운연동 287-1	신 한 을	
							편입:수목(임목조서참조)				

지 장 물 조 서

공사명 : 운연동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 개 지		지장물면적(M2)			증별	구 조	용 도	소 유 자		비 고
	동 명	지 번	편 입	잔 여	계				주 소	성 명	
10	운연동	292-2	6.75	-	6.75		샌드위치패널	창고	운연동 292-2	이 창 덕	
			5.17	6.77	11.94		브릭,스레트	창고			
계			11.92	6.77	18.69		편입: 브릭담장(L=7.3M)				
11	운연동	289-1	2.08	10.16	12.24		브릭,샌드위치패널	창고	운연동 290-1	김 광 진	
		290-1	5.05	3.34	8.39		세멘벽돌,스레트	창고			
계			7.13	13.50	20.63		편입: 브릭담장(L=3.3M), 적벽돌담장(L=8.2M), 철조문(L=3.3M)				
12	운연동	290-1	9.33	17.67	27.00		컨테이너	창고	운연동 290-1	김 광 진	
			-	19.40	19.40		목조,천막	창고			
계			9.33	37.07	46.40						
13	운연동	289-1	25.78	134.37	160.15		브릭,스레트,천막	공장	운연동 289-1	채 인 숙	
			14.37	174.63	189.00		브릭,스레트	공장			
			-	23.80	23.80		쇠파이프,천막	공장			
			-	10.00	10.00		컨테이너	창고			
계			40.15	342.80	382.95		편입: 브릭담장(L=15.0M)				

지 장 물 조 서

공사명 : 운연동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 개 지		지장물면적(M2)			증별	구 조	용 도	소 유 자		비 고
	동 명	지 번	편 입	잔 여	계				주 소	성 명	
14	운연동	292	14.43	10.02	24.45		쇠파이프,천막	창고	운연동 292	김 학 수	
			-	18.00	18.00		컨테이너	사무실			
계			14.43	28.02	42.45		편입: 용벽/브릭담장(L=11.9M), 수목(임목조서참조)				
15	운연동	293	5.17	243.38	248.55		샌드위치패널,스레트	공장	운연동 252-1	이 성 모	
			3.42	-	3.42		목재,양철판	창고			
			-	4.41	4.41		목재,양철판	창고			
계			8.59	247.79	256.38		편입: 양철판담장(L=31.8M), FRP이동식화장실(1.4x1.0)-1동, 집진기-2식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7 - 125호

공 시 송 달

식품위생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귀하에게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우편물 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못하였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 실시

2. 당 사 자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업주명	주민등록 번호	소 개 지	주 소
일 반 음식점	간석3-824	생선굴터	손홍란	690225- 2*****	간석동 921-14	불명

3.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4. 청문사유 : 영업시설물 전부멸실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2조 및 동법 제58조
- 식품위생법 제64조

6. 청문내역

- 기 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032-453-2622)
- 청문일시 : 2007. 2. 21. (수) 11:00
- 청문장소 : 남동구청 환경위생과(6층) 사무실
- 청문주재자 : 남동구청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7. 기 타 : 청문 불참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행정처분(영업장 폐쇄).

2007. 2. 7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7 - 126호

2007년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기관 공모

2007년도 정부지원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07년 2월 5일

남 동 구 청 장

I. 목적

- ☐ 2007년도 정부지원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기관 선정

II. 신청 자격

- ☐ 사업 기관
 -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후견기관
 - * 이상 기관은 '07. 1. 1 현재 지원을 받고 있거나 법인 등 필요한 등록을 마쳐야 함
 - 기타 지자체에서 정한 일정 심사 요건을 충족하는 공공, 비영리 및 민간 기관
 - * 장애인 복리증진을 위한 관련 단체도 신청 가능

III. 대상 기관 업무

- ☐ 사업 기관 업무
 - 활동보조인 모집·교육 및 관리
 - 사업기관은 활동보조인 모집을 사업기관 지정 공고 후 즉시 시작하여야 함
 - 사업기관은 활동보조인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전국대상 홍보 및 관련 홍보물 제작·배포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
 - 사업기관은 계약 체결한 활동보조인에 대하여 소정의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사업기관은 활동보조인 대상 자체 교육을 최소 20시간 실시하여야 함
- 활동보조인은 기본교육(20시간), 선택교육(40시간) 및 보수교육(20시간) 등 전문교육(80시간)은 교육기관에 위탁

○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 신변처리 지원 : 목욕, 배설, 옷갈아입기, 세면, 식사보조 등
- 가사지원 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금전관리, 시간관리, 일정관리 등
- 커뮤니케이션 보조 : 수화통역, 점자통역, 낭독보조, 대필 보조 등
- 이동의 보조 : 안내도우미 · 대리운전지원(시각장애인), 학교 등 · 하교, 직장 출 · 퇴근, 야외 · 문화활동 지원 등
- 동료상담서비스 : 복지상담, 서비스안내 등 (장애인에 의한 상담)
- *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인과 개별 계약시 합의 하에 선별적 제공 가능

○ 서비스 이용자와의 계약 및 교육

- 사업기관은 서비스 이용자와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계약 체결시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제공하여야 함
- 사업기관은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 대상자별 표준 교육교재안은 보건복지부에서 개발 · 보급할 예정

IV. 대상 기관 준수 사항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간

- 연간 사업실적 및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재지정 여부 결정

☐ 사업 기관

- 사업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수익금은 활동보조인 및 전담인력 (배치시)에 대한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 및 중증장애인 배상 · 상해보험, 활동보조원 상해보험 등 사회보험료, 교통비 ·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함

- 수익금 중 활동보조인에 대한 인건비는 90% 수준으로 지급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지 않는 사업기관인 경우에는 80~90% 범위에서 지급 가능
- 사업기관에 별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지원이 있는 때에는 동 사업비를 별도 회계로 편성·집행하여야 함
- 사업기관은 향후 전자바우처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으로 지정 및 등록하여야 함
 - * 전자바우처 운영 및 지불 체계에 복지부 「사회서비스혁신사업단」에서 실시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추후 안내
- 사업기관에서 활동보조인에 대한 배상·상해 보험을 가입
 - 4대 보험은 사업기관에서 해당 보험의 적용 기준에 따라 처리
 - * 배상·상해보험 가입 조건 및 보험료에 대해서는 2월 중 안내
- 사업기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분기별로 사업실적을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법과 지침 등에 의거 사업기관 운영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 사업기관은 사업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비스이용자 대표, 관계공무원, 기타 활동보조지원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운영위원회 설치 가능

V. 신청서 제출

- ☐ 제출 기간 : 2007. 2. 5(화) ~ 2. 16(금) 18:00까지
 -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마감시간까지 도착 분에 한함
- ☐ 제출서류
 - 사업(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5부
 - 사업(교육)계획서 각 5부

- 최근 3년간 사업(교육)실적 각 5부
 - * 사업(교육)실적이 3년 이내인 경우 그 기간동안의 실적
- 기타 사업(교육)계획서 및 실적 관련 근거 자료가 있을시 각 5부
- 기관 설치신고필증 사본, 법인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사본 중 5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팩스 및 이메일 접수

○ 주 소 :

○ 전화/팩스 :

○ 이메일 :

*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시에는 반드시 제출 사실을 전화로 통보하고 별도 근거 자료는 마감일 당일까지 도착하도록 하여야 함

VI. 기관 선정

☐ 심사 개요

- 심사 방법 : 지자체에서 심사위원회(5인 내외) 구성·심사
- 결과 통보 : 심의·선정 후 공고 및 개별 통보

☐ 심사 기준

○ 심사 항목

- (1) 서비스 제공 실적
- (2) 서비스 제공 능력
- (3) 사업 운영 능력
- (4) 예산 조달 방안
- (5) 서비스 관리 능력
- (6) 기타 평가 항목

○ 심사 결과 득점(100점 만점)순으로 사업(교육)기관을 지정

☐ 지정 공고 : 2007. 2. 23(금) 10:00, 지자체 홈페이지

VII. 행정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세부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할 것

☐ 문의가 있을 경우 아래로 하시기 바람

○ 연락처 :

○ 담 당 :

남 동 구 청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7 - 127호

시 설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만수1동 청사신축 전기공사
- 공사위치 : 남동구 만수동 983-5번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0일
☞ 착공 시기는 주 공종인 건축공사의 착공시기를 고려하여 협의하여 조정
- 공사개요 : 동청사 신축 전기공사 1식(지하1층 지상 3층)
- 설계금액 : ₩199,696,000원(추정가액 100,610,000원 부가가치세 10,061,000원,
수배전반 61,524,000원, 조명기구 23,995,000원, 한전인입비등
3,506,000원)
- 기초금액 : ₩110,671,000원 (한전인입비는 낙찰을 적용 없이 계약시 반영)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7년 02월 07일(수) 09:00~ 02월 16일(금요일)16: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7년 02월 16일(금요일) 17:00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사업소를 갖추고,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로
- 전기공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업체로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은 총액인(₩110,671,000)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다 빈도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7.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한(87.745%)적 최저가로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83호, 2005. 12. 30)에 의거 수행능력 평가점수와 가격입찰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기준(2005년도) : 부채비율 162.55% 유동비율 131.79%

8.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 경리팀(032-453-2262) 또는 건축과 공
공시설팀(032-453-2813)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namdong.incheon.kr>)의 입찰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02월 0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7 - 128호

시 설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만수1동 청사신축 정보통신 공사
- 공사위치 : 남동구 만수동 983-5번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0일
 ☞ 착공 시기는 주공종인 건축공사의 착공시기를 고려하여 협의하여 조정
- 공사개요 : 동청사신축 정보통신공사 1식(지하1층 지상 3층)
- 설계금액 : ₩78,215,000원(추정가액 54,250,000원 부가가치세 5,425,000원,
 방송장비 18,540,000원)
- 기초금액 : ₩59,675,000원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7년 02월 07일(수) 09:00~ 02월 16일(금요일)15: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7년 02월 16일(금요일) 16:00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사업소를 갖추고,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소지업체로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은 총액인(₩59,675,000) $\pm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다 빈도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7.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한(87.745%)적 최저가로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83호, 2005. 12. 30)에 의거 수행능력 평가점수와 가격입찰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기준(2005년도) : 부채비율 164.93% 유동비율 123.04%

8.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 경리팀(032-453-2262) 또는 건축과 공시설팀(032-453-2813)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namdong.incheon.kr>)의 입찰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02월 0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임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7 - 129호

시 설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만수1동 청사신축 소방(전기, 기계) 설비공사
- 공사위치 : 남동구 만수동 983-5번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0일
☞ 착공 시기는 주공종인 건축공사의 착공시기를 고려하여 협의하여 조정
- 공사개요 : 동청사 신축 소방 설비공사 1식(지하1층 지상 3층)
- 설계금액 : ₩80,740,000원(추정가액 73,400,000원 부가가치세 7,340,000원)
- 기초금액 : ₩80,740,000원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7년 02월 07일(수) 09:00~ 02월 16일(금요일)14: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7년 02월 16일(금요일) 15:00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사업소를 갖추고,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로
-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면허소지업체로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은 총액인(₩80,740,000)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다 빈도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7.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한(87.745%)적 최저가로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83호, 2005. 12. 30)에 의거 수행능력 평가점수와 가격입찰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기준(2005년도) : 부채비율 155.40% 유동비율 127.74%

8.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 경리팀(032-453-2262) 또는 건축과 공공시설팀(032-453-2813)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namdong.incheon.kr>)의 입찰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7년 02월 0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임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7 - 133호

과징금부와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징금부과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 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불분명 및 수취인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과징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2월 8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송달대상자** : 김명천 외 24명(붙임 ‘공시송달대상자명단’ 참조)
2. **공시송달기간** : 2007. 2. 8 ~ 2007. 2. 22 (15일간)
3. **납부장소** : 인천광역시시내 시중은행 및 우체국
4. **근거법규** : 화물운수사업법 10조 및 동 시행규칙 21조 2의2
동 시행규칙 30조(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
5. **납부고지서**를 남동구청 교통과에서 발급 받아야 하며, 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 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 바랍니다.
6. 아울러 과징금 처분에 의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18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과 대중교통팀 (☎453-2914)

붙임

- 공시 송달 대상자 명단 -

연번	성명	주 소	위반 내용	처분결과	비고
1	김명천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15번지 21호 26/3 경동빌라 다동 B02호	차고지의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인천86바6760
2	김영도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35번지 8호 28/5 신비주택 103호	차고지의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인천81바8321
3	김정애	인천 남동구 간석동 466번지 9호 13/4 태영빌라 가동 B02호	차고지의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인천83바1171
4	김종선	인천 남동구 간석동 914번지 4호 42/2	차고지의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인천86바5499
5	김창선	인천 남동구 만수동 898번지 39호 11/1 휴먼테크빌 2동 401호	차고지의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인천86바8387
6	김천수	인천 남동구 만수동 5번지 3호 18/7 아주아파트 사동 601호	차고지의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인천86바5146
7	노중철	인천 남동구 남촌동 283번지 5호 종로하이츠빌라 B동 B01호	차고지의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인천86사2452
8	마상건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48번지 38호 32/4 한양빌라 2동 201호	차고지의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인천83바2334
9	박수인	인천 남동구 간석동 33번지 9호 43/5 우성아파트빌 E동 402호	차고지의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인천86사2696
10	박장하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99번지 4호 401호	차고지의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인천82바8083
11	박재은	인천 남동구 간석동 31번지 18호 43/6	차고지의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인천81바8230
12	박종태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44번지 9/4 뉴서울아파트 101동 1311호	차고지의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인천86바9757
13	배정수	인천 남동구 만수동 1번지 58호 24/3	차고지의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인천84바9013
14	서재열	인천 남동구 간석동 482번지 13호 17/7	차고지의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인천86바8007
15	안찬기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34번지 11호 (102호)	차고지의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인천86바7713
16	윤주복	인천 남동구 만수동 3번지 9호 32/1 정광아파트 가동 601호	차고지의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인천82바1822
17	이용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43번지 23/2 주공아파트 1002동 103호	차고지의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인천86바7561
18	장종각	인천 남동구 간석동 145번지 5호 3/8 인포홈타운 A동 202호	차고지의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인천82바2123
19	조영호	인천 남동구 간석동 443번지 1호 10/1 402호	차고지의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인천85바5147
20	조윤구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7번지 62호 31/1 간석빌라 B동 101호	차고지의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인천84바9051
21	조행인	인천 남동구 만수동 5번지 426호 20/6 신동아아파트 9동 1007호	차고지의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인천86바9482
22	최미용	인천 남동구 만수동 66번지 4호 30/5	차고지의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인천84바9009
23	한순진	인천 남동구 만수동 5번지 316호 18/5 아주아파트 바동 304호	차고지의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인천82바2719
24	홍종남	인천 남동구 만수동 116번지 316호 3/2 대산빌라 9동 202호	차고지의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인천86바6072
25	황은중	인천 남동구 만수동 116번지 4/3	차고지의 밤샘주차	과징금 10만원	인천86바8048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7 - 134호

용역(일반)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남동구 동청사 청소관리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07.12.31일까지

다. 용역개요

○ 용역내용 : 남동구 동청사 17개소의 내 · 외부 청소관리

○ 현 황 : 건물연면적 19,551㎡, 대지면적 15,809㎡

라. 예정금액 : 301,580,000원

☞ 예정금액은 1년간 예산으로 계약시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계약체결

마. 기초금액 : 301,580,000원(추정가격 274,163,636원, 부가세 27,416,364원)

바.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7.02.09(금) 09:00 ~ 2007.02.20(화) 16:00

사.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 2007.02.20(화) 17: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써 입찰등록일 현재 공중위생법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필한 업체로

나. 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사업소(영업소)를 갖추고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건물 연면적 15,000㎡이상의 단일계약 실적 이 있는 업체(단, 공장, 공동주택, 상가, 백화점, 오피스텔 또는 주상복합 건축 물의 용역실적과 10개월 미만 실적은 제외함).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인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 및 일반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세입조치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다. 본 건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자부 예규219호) 및 인천광역시용역적격심사기준(인천광역시예규 제430호)에 의거 심사 평가하여 예정가격의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중 적격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95점 이상인자를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동일한 점수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선정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6.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입찰자는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인천광역시 일반용역등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시방서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계약체결은 낙찰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구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완료 후 대가 청구시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 라.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 명의의 청렴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구자치지원팀(☎453-2234), 계약(입찰)에 관한사항은 경리팀(☎453-22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02. 07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7 - 137호

공 고 문

2007년 남동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 안내

남동구에서는 지역 문화예술의 장기적 발전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2007년도 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남동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사업과 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2월 8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지원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남동구에 등록(단체등록) 또는 거주(단체 대표자 거주)
2년이상인 문화예술사업 활동실적이 있는 남동구 문화예술단체
 - 공고일 현재 남동구 거주 2년이상인 문화예술사업 활동실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 ※ 제외단체 및 개인
- 국·공립(시·구립) 기관 및 산하·출연기관(단체)
 - 방송국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및 대학교의 동아리
 -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단체 및 개인
 - 학교 및 종교단체
 - 중앙 및 시 산하 소속단체

(예, 한국미협 인천시지회, 한국예총 인천시지회 등)

- 전년도 기금지원자로 선정되었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2. 지원신청 대상사업

-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공익성 문화예술사업
- 지방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발전적이고 창의적인 남동구 특색사업

※ 비대상 사업

- 단체의 운영비 및 신규설립에 관한 필요경비 지원사업
- 시설의 건립·구입·재건축 사업
- 기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기금적립 및 용자 지원사업
- 공익성보다 개인 또는 단체를 위한 사업이거나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
- 타 기관으로부터 기 지원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3. 지원사업비 : 36,000천원

4. 지원대상사업 규모별 지원한도액 : 단체(7,000천원 이내), 개인(3,000천원 이내)

- ※ 지원금 액수는 지원신청한 사업성격과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금은 사업비 일부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체자금 및 외부지원금 등 적절한 자금 조달 계획 수립 요망

5. 지원신청서 접수기간 : 2007. 2. 9 ~ 2. 28(20일간)

【단, 평일(월~금) 오전9시~오후6시에만 신청가능】

- ※ 지원신청서는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고시·공고』, 『새소식』란에서 서식 다운받아 작성 가능함.

6.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 88(만수동 1008) 남동구청 문화홍보실

7. 접 수 처 : 남동구청 문화홍보실 문화예술팀 (☎ 453-2132)

8. 지원사업 심의결과 발표 : 2007. 3. 15일한

※ 구 홈페이지 및 지원확정자 개별통보

9. 신청서류

- 기금지원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단체소개서(구성현황,연혁,활동실적,회원명단 등)
- 자기소개서 1부
- 기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설립을 알 수 있는 자료 1부
- 과거 2년간 문화예술사업 활동실적 자료

※ 활동실적 증빙자료는 신청사업 심의시 반영되며 제출된 신청서와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10. 지원절차

- 지원금 교부신청서 접수 : 사업 1개월전 제출
- 지원금 교부 : 교부신청서 제출 후
- 사업실시(시행) : 지원금 수령 후 해당사업 실시
- 정산 및 성과보고서 제출 : 지원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 지원사업 종료 : 제출된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정산 후 사업종료

11. 지원심의기준

- 사업의 독창성(창의성), 작품의 문화예술성, 사업계획의 성실성, 사업계획의 추진가능성(현실성), 사업비 예산편성의 적정성, 주요추진실적, 공공성, 구민에 대한 기여도 등

12. 지원대상 선정제한

- 한 단체(예술인)가 1개 이상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실제지원은 문예기금 사정과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조정
- 한 단체(예술인)가 동일한 사업으로 타기관 및 단체에서 당해연도에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전년도 개인 기금 수혜자인 경우 지원신청은 가능하나 사업예산과 지원신청사항을 고려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13. 지원조건

- 지원확정사업을 불가피한 사유 없이 포기·중단하였을 경우 다음연도 지원사업 신청자격 상실
-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했을 경우 지원금 교부취소 또는 지원금의 환수조치 등 불이익 조치
- 기금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사업은 다음년도 기금사업지원 심의 대상에서 제외
- 기금지원을 받은 사업 수혜자는 책자, 포스터, 전단 등에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임을 명기

예시) ① 본 사업은 사업비 일부를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② 후 원 : 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구 로고 인쇄)

14. 기 타

- 지원신청서는 원본 그대로 심의자료가 되므로 가능하면 PC로 작성하여 주시고 접수 이후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제출후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동구청 문화홍보실(☎ 453-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지원신청서

분 야 별	☐ 문학 ☐ 미술 ☐ 서예 ☐ 음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연예 ☐ 국악 ☐ 사진 ☐ 기타()			
단체명(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업장소 ○ 사업내용 - 사업취지 및 목적, 기대효과, 예산조달방안 등 기재			
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천원)				
총사업비	기금신청액	자부담액	후원금	기 타
위와 같이 2007년도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07년 월 일 신청인 : (직인,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자기소개서 4. 단체등록증 등 사본 5. 연혁 및 활동실적 증빙자료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표)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기간 :

3. 사업장소 :

4. 사업내용 :

- 목적, 기대효과, 기금신청액 전액 지원불가시 예산조달방안 또는 사업수행 가능성 여부 등 기재

5. 소요예산

○ 소요자금 조달방법

(단위 : 천원)

계	자 체 조 달				문화예술 진흥기금	기타 후원금등
	소 계	사업수입	회원모금	자체운용기금		

○ 소요예산액

(단위 : 천원)

내 역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계	자체조달	문예기금	기타 후원금등		
계						

6. 타사업 지원신청현황

(단위 : 천원)

신청사업명	지원신청액	비 고

7.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받은 실적(최근3년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지원금액	비 고

8. 단체 구성현황(단체일 경우)

임원수	명	회원수	○ 정회원 : 명 ○ 준회원 : 명 ○ 기 타 : 명
-----	---	-----	---

※ 회원명단 및 정관 또는 회칙사본 첨부

9. 연혁 및 활동실적

기 간	활 동 내 용	비 고

10. 법적 자격 구비현황

등록일자	등록내용	등록기관명	등록번호

고 시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7 - 6호

신설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하여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지적법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2월 5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평면직각중형선수치		표 고 (m)	경 위 도	
	X(m)	Y(m)		경도(L)	위도(B)
	별		첨		
기 준 원 점 명	가리원점, 중부원점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				
측 량 연 월 일	별 첨				
측량성과 보관장소	남동구청 민원지적과				
비 고	설 치				

지적측량기준점(도근점) 관리대장

일련 번호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평면직각중형선수치(중부)		평면직각중형선수치(가리)		설치일자	표지 구분	토지소재지	비고
			X(m)	Y(m)	X(m)	Y(m)				
1	도근점	1			4006.71	-15273.78	2006.12.7	철재	간석동395	재설치
2	도근점	2			3949.74	-15220.95	2006.12.7	철재	간석동395-27	재설치
3	도근점	6			3989.46	-14905.24	2006.12.7	철재	간석동383-5	재설치
4	도근점	8			4041.06	-14778.46	2006.12.7	철재	간석동381-1	재설치
5	도근점	9			3982.16	-14784.25	2006.12.7	철재	간석동381-3	재설치
6	도근점	22			3928.00	-15200.92	2006.12.7	철재	간석동529	재설치
7	도근점	62			4602.69	-14076.74	2006.12.7	철재	간석동73-3	재설치
8	도근점	63			4604.09	-14024.37	2006.12.7	철재	간석동74-2	재설치
9	도근점	74			4459.41	-13687.51	2006.12.7	철재	간석동88-1	재설치
10	도근점	78			4118.05	-13588.11	2006.12.7	철재	간석동51-7	재설치
11	도근점	79			4159.36	-13650.59	2006.12.7	철재	간석동119-6	재설치
12	도근점	81			4261.07	-13813.65	2006.12.7	철재	간석동114-1	재설치
13	도근점	104			3331.04	-13311.21	2006.12.7	철재	구월동4-23	재설치
14	도근점	105			3380.52	-13263.45	2006.12.7	철재	구월동4-45	재설치
15	도근점	106			3473.07	-13268.46	2006.12.7	철재	구월동3-76	재설치
16	도근점	107			3557.13	-13274.28	2006.12.7	철재	구월동2-21	재설치
17	도근점	108			3642.15	-13278.89	2006.12.7	철재	구월동3-11	재설치
18	도근점	114			3644.22	-13382.80	2006.12.7	철재	구월동7-13	재설치
19	도근점	115			3644.44	-13456.70	2006.12.7	철재	구월동7-39	재설치
20	도근점	121			3647.19	-13503.71	2006.12.7	철재	구월동7-40	재설치

일련 번호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평면직각중형선수치(중부)		평면직각중형선수치(가리)		설치일자	표지 구분	토지소재지	비고
			X(m)	Y(m)	X(m)	Y(m)				
21	도근점	130			4042.41	-13722.21	2006.12.7	철재	간석동169-17	재설치
22	도근점	151			3855.80	-13949.87	2006.12.7	철재	간석동187-3	재설치
23	도근점	153			3768.99	-13997.04	2006.12.7	철재	간석동192-1	재설치
24	도근점	189			3845.54	-14141.45	2006.12.7	철재	간석동283-2	재설치
25	도근점	234			3646.66	-13328.59	2006.12.7	철재	구월동3-29	재설치
26	도근점	237			3375.92	-13312.36	2006.12.7	철재	구월동4-20	재설치
27	도근점	238			3369.84	-13442.69	2006.12.7	철재	구월동6-35	재설치
28	도근점	240			3366.79	-13492.38	2006.12.7	철재	구월동6-57	재설치
29	도근점	254			3674.38	-13991.17	2006.12.7	철재	간석동195-2	재설치
30	도근점	255			3726.43	-13993.66	2006.12.7	철재	간석동193-2	재설치
31	도근점	256			3810.37	-13997.75	2006.12.7	철재	간석동189-2	재설치
32	도근점	271			3777.48	-13851.15	2006.12.7	철재	간석동157.2	재설치
33	도근점	273			3682.97	-13846.57	2006.12.7	철재	간석동154-5	재설치
34	도근점	279			3988.10	-13632.80	2006.12.7	철재	간석동122-15	재설치
35	도근점	280			4386.33	-13796.25	2006.12.7	철재	간석동101-1	재설치
36	도근점	310			3686.84	-14714.03	2006.12.7	철재	간석동544-6	재설치
37	도근점	311			3815.28	-14718.17	2006.12.7	철재	간석동543-13	재설치
38	도근점	322			4096.22	-14899.93	2006.12.7	철재	간석동379	재설치
39	도근점	326			4003.98	-15148.18	2006.12.7	철재	간석동391-4	재설치
40	도근점	345			4259.16	-13593.52	2006.12.7	철재	간석동91-2	재설치

일련 번호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평면직각중형선수치(중부)		평면직각중형선수치(가리)		설치일자	표지 구분	토지소재지	비고
			X(m)	Y(m)	X(m)	Y(m)				
41	도근점	380			4199.40	-15376.73	2006.12.7	철재	간석동894-4	재설치
42	도근점	485			4514.00	-15489.67	2006.12.7	철재	간석동617-82	재설치
43	도근점	488			4401.61	-15539.19	2006.12.7	철재	간석동762-10	재설치
44	도근점	489			4319.54	-15568.27	2006.12.7	철재	간석동617-61	재설치
45	도근점	490			4223.89	-15612.73	2006.12.7	철재	간석동617-16	재설치
46	도근점	720	438782.82	173951.03			2006.12.7	철재	구월동1143-34	재설치
47	도근점	1361	439845.19	175649.35			2006.12.7	철재	만수동858-10	재설치
48	도근점	1440	438216.36	173187.00			2006.12.7	철재	구월동1404	재설치
49	도근점	1446	438222.52	173116.06			2006.12.7	철재	구월동1402	재설치
50	도근점	1447	438222.22	173096.49			2006.12.7	철재	구월동1397-1	재설치
51	도근점	1448	438242.42	173075.03			2006.12.7	철재	구월동1377-5	재설치
52	도근점	1452	438264.53	173051.45			2006.12.7	철재	구월동1379-8	재설치
53	도근점	1498	438208.61	173214.97			2006.12.7	철재	구월동1377-5	재설치
54	도근점	1635	440317.58	175733.30			2006.12.7	철재	만수동841	재설치
55	도근점	1641	440231.54	175717.81			2006.12.7	철재	만수동840-12	재설치
56	도근점	1643	440182.62	175709.61			2006.12.7	철재	만수동841-26	재설치
57	도근점	1644	440116.63	175695.52			2006.12.7	철재	만수동843-21	재설치
58	도근점	1645	440034.43	175681.96			2006.12.7	철재	만수동856-10	재설치
59	도근점	1647	439981.40	175673.18			2006.12.7	철재	만수동855-18	재설치
60	도근점	1648	439920.81	175663.76			2006.12.7	표석	만수동857-32	재설치

일련 번호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평면직각중형선수치(중부)		평면직각중형선수치(가리)		설치일자	표지 구분	토지소재지	비고
			X(m)	Y(m)	X(m)	Y(m)				
61	도근점	1650	439128.72	173919.67			2006.12.7	철재	구월동1139-5	재설치
62	도근점	1657	438915.16	173870.21			2006.12.7	철재	구월동1142-8	재설치
63	도근점	1658	438908.99	173964.03			2006.12.7	철재	구월동1143-27	재설치
64	도근점	1659	439115.44	174055.20			2006.12.7	철재	구월동1139-27	재설치
65	도근점	2382	434703.46	173262.17			2006.11.30	철재	논현동471-7	재설치
66	도근점	2544	435089.21	173837.50			2006.11.30	철재	남촌동640	재설치
67	도근점	2615	433928.65	172881.90			2006.11.30	철재	고잔동748	재설치
68	도근점	2616	433968.98	172814.29			2006.11.30	철재	고잔동748	재설치
69	도근점	2617	434005.27	172753.17			2006.11.30	철재	고잔동748	재설치
70	도근점	2619	433876.38	172677.21			2006.11.30	맨홀	고잔동749	재설치
71	도근점	2620	433841.69	172740.36			2006.11.30	철재	고잔동749	재설치
72	도근점	3623			3323.93	-13441.26	2006.12.7	철재	구월동6-38	신설
73	도근점	3624			3893.90	-14715.34	2006.12.13	철재	간석동542-1	신설
74	도근점	3625			4046.25	-14901.58	2006.12.7	철재	간석동387-1	신설
75	도근점	3626			3997.11	-15026.64	2006.12.7	철재	간석동388-34	신설
76	도근점	3627			4010.92	-15242.43	2006.12.7	철재	간석동393-6	신설
77	도근점	3628			3857.78	-13999.90	2006.12.7	철재	간석동186-10	신설
78	도근점	3629			3818.88	-13854.18	2006.12.7	철재	간석동190-1	신설
79	도근점	3630			3861.70	-13857.09	2006.12.7	철재	간석동163-5	신설
80	도근점	3631			4602.09	-13969.22	2006.12.13	철재	간석동117-5	신설

일련 번호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평면직각중형선수치(중부)		평면직각중형선수치(가리)		설치일자	표지 구분	토지소재지	비고
			X(m)	Y(m)	X(m)	Y(m)				
81	도근점	3632			4187.20	-13694.68	2006.12.13	철재	구월동6-47	신설
82	도근점	3633			4358.94	-13753.96	2006.12.13	맨홀	간석동100-1	신설
83	도근점	3634			4487.61	-13731.58	2006.12.7	철재	간석동85-11	신설
84	도근점	3635			4559.15	-15404.28	2006.12.7	철재	간석동614	신설
85	도근점	3636			4635.29	-15430.27	2006.12.7	철재	간석동762-71	신설
86	도근점	3640	437479.51	177449.67			2006.9.29	철재	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내	신설
87	도근점	3641	437535.91	177532.12			2006.9.29	철재	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내	신설
88	도근점	3642	437593.81	177605.56			2006.9.29	철재	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내	신설
89	도근점	3643	437338.52	177443.97			2006.9.29	철재	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내	신설
90	도근점	3644	437337.90	177487.09			2006.9.29	철재	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내	신설
91	도근점	3645	437265.06	177483.99			2006.9.29	철재	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내	신설
92	도근점	3646	436659.92	177944.80			2006.9.29	표석	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내	신설
93	도근점	3647	436665.11	177983.05			2006.9.29	표석	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내	신설
94	도근점	3648	436662.69	178028.53			2006.9.29	철재	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내	신설
95	도근점	3649	436629.87	178075.37			2006.9.29	철재	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내	신설
96	도근점	3650	436577.06	178069.10			2006.9.29	철재	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내	신설
97	도근점	3651	436553.52	178023.68			2006.9.29	철재	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내	신설
98	도근점	3652	436532.83	177979.92			2006.9.29	철재	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내	신설
99	도근점	3653	436562.11	177955.59			2006.9.29	철재	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내	신설
100	도근점	3654	436608.13	177938.50			2006.9.29	철재	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내	신설

일련 번호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평면직각중형선수치(중부)		평면직각중형선수치(가리)		설치일자	표지 구분	토지소재지	비고
			X(m)	Y(m)	X(m)	Y(m)				
101	도근점	3655	436610.64	177833.35			2006.9.29	철재	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내	신설
102	도근점	3656	436672.93	177830.92			2006.9.29	M	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내	신설
103	도근점	3657	436776.11	177829.54			2006.9.29	철재	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내	신설
104	도근점	3658	436601.63	177983.28			2006.9.29	철재	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내	신설
105	도근점	1			-2354.20	-13772.70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106	도근점	2			-2548.39	-13793.33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107	도근점	3			-2622.08	-13578.53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108	도근점	4			-2592.45	-13398.30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109	도근점	5			-2560.19	-13206.34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110	도근점	6			-2550.81	-13046.44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111	도근점	7			-2447.41	-12719.33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112	도근점	8			-2343.34	-12746.70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113	도근점	9			-2230.84	-12799.08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114	도근점	10			-2037.60	-12749.55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115	도근점	11			-1924.60	-12671.54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116	도근점	12			-2405.31	-12523.04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117	도근점	13			-2391.35	-12381.26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118	도근점	14			-2322.31	-12285.56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119	도근점	15			-2119.26	-12002.50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120	도근점	16			-2037.57	-11858.34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일련 번호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평면직각중형선수치(중부)		평면직각중형선수치(가리)		설치일자	표지 구분	토지소재지	비고
			X(m)	Y(m)	X(m)	Y(m)				
121	도근점	17			-1983.11	-11752.55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122	도근점	18			-1842.88	-11601.47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123	도근점	19			-2193.66	-11349.97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124	도근점	20			-2356.22	-11548.00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125	도근점	21			-2476.13	-11695.19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126	도근점	22			-2301.77	-11856.16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127	도근점	23			-2709.16	-12010.34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128	도근점	24			-2897.22	-11878.86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129	도근점	25			-2974.13	-11773.06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130	도근점	26			-3114.26	-11674.86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131	도근점	27			-2951.03	-12394.96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132	도근점	28			-2945.32	-12648.39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133	도근점	29			-2849.73	-12696.57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134	도근점	30			-2649.42	-12689.25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135	도근점	31			-2972.95	-12741.12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136	도근점	32			-3015.29	-12951.33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137	도근점	33			-3038.28	-13041.38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138	도근점	34			-3120.17	-13165.55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139	도근점	35			-3109.08	-13326.83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140	도근점	36			-3258.76	-13280.14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일련 번호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평면직각중형선수치(중부)		평면직각중형선수치(가리)		설치일자	표지 구분	토지소재지	비고
			X(m)	Y(m)	X(m)	Y(m)				
141	도근점	37			-2860.25	-13355.94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142	도근점	38			-3186.99	-13519.88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143	도근점	39			-3071.27	-13659.36	07.01.15	PVC	논현2지구	신설
144	도근점	40			-3003.32	-13865.25	07.01.15	PVC	논현2지구	신설
145	도근점	41			-2952.26	-14022.69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146	도근점	42			-2806.31	-13914.67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147	도근점	43			-2772.72	-14130.74	07.01.15	PVC	논현2지구	신설
148	도근점	44			-2622.61	-14516.09	07.01.15	표철	논현2지구	신설
149	도근점	175			3940.31	-14198.43	2007.1.16	맨홀	간석동 310-10	재설치
150	도근점	189			3844.62	-14140.98	2007.1.16	철재	간석동 308-10	재설치
151	도근점	190			3848.01	-14082.52	2007.1.16	철재	간석동 282-1	재설치
152	도근점	257			3948.64	-14005.86	2007.1.16	철재	간석동 185-1	재설치
153	도근점	288			3841.97	-14190.08	2007.1.16	철재	간석동 309-11	재설치
154	도근점	492	438828.51	172974.86			2007.1.15	철재	구월동 1117-2	재설치
155	도근점	493	438833.07	172926.27			2007.1.15	철재	구월동 1118-28	재설치
156	도근점	494	438784.89	172923.18			2007.1.15	철재	구월동 1117-26	재설치
157	도근점	497	438798.13	172737.09			2007.1.15	철재	구월동 1119	재설치
158	도근점	498	438836.68	172880.00			2007.1.15	철재	구월동 1118-33	재설치
159	도근점	544	439108.57	173092.09			2007.1.15	철재	구월동 1089-1	재설치
160	도근점	545	439112.22	173021.81			2007.1.15	철재	구월동 1088-31	재설치

일련 번호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평면직각중형선수치(중부)		평면직각중형선수치(가리)		설치일자	표지 구분	토지소재지	비고
			X(m)	Y(m)	X(m)	Y(m)				
161	도근점	578	439060.48	173018.40			2007.1.15	철재	구월동 1100-29	재설치
162	도근점	667	438263.43	174105.21			2007.1.15	철재	구월동 1184-1	재설치
163	도근점	1220	439497.97	174752.16			2007.1.15	철재	구월동 1241	재설치
164	도근점	1221	439454.62	174747.86			2007.1.15	철재	구월동 1241-7	재설치
165	도근점	1222	439443.88	174831.63			2007.1.15	철재	구월동 1241-18	재설치
166	도근점	1223	439434.62	174897.43			2007.1.15	철재	구월동 1244-5	재설치
167	도근점	1224	439431.21	174919.30			2007.1.15	철재	구월동 1244-8	재설치
168	도근점	1369	439503.17	174836.73			2007.1.15	철재	구월동 1243	재설치
169	도근점	1371	439509.12	174942.56			2007.1.15	철재	구월동 1245	재설치
170	도근점	1381	439504.49	174884.12			2007.1.15	철재	구월동 1243-3	재설치
171	도근점	1583	439068.73	172895.79			2007.1.15	철재	구월동 1100-4	재설치
172	도근점	1587	438792.56	172832.09			2007.1.15	철재	구월동 1118-20	재설치
173	도근점	1589	438845.48	172738.59			2007.1.15	철재	구월동 1118	재설치
174	도근점	1590	438842.74	172801.31			2007.1.15	철재	구월동 1118-15	재설치
175	도근점	3628			3854.53	-14000.53	2007.1.16	철재	간석동 208-10	재설치
176	도근점	3637	438952.72	172887.95			2007.1.15	철재	구월동 1101-14	재설치
177	도근점	3638	439510.95	174994.68			2007.1.15	철재	구월동 1245-1	재설치
178	도근점	3639			3905.41	-14003.27	2007.1.16	철재	간석동 209-5	재설치